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38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380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1가단1029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임

변론 종결 2022. 3. 2.

판결 선고 2022. 4. 6.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1가단1029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B과 피고 사이에 2020.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9. 18. 접수 제2157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제1심 법원은 2021. 2. 1.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H건물, I호"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인 J은 2021. 2. 3. 위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수령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21. 4. 20.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1. 3. 31.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21. 4. 6. 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21. 4. 7. 송달간주 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21. 4. 20.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 4. 21.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21. 4. 2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2021. 5. 4.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2021. 5. 19.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제1심판결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2021. 7. 13.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배우자인 J이 2021. 2. 3.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수령할 당시 피고는 지방으로 자주 출장을 가서 집에 거의 없었고 J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피고의 주거지에 들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2) 또한 제1심 법원은 피고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음에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한 차례 송달한 후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은 제1심판결 정본 또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이러한 무변론 선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 내지 제1심판결 정본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송달의 적법 여부 가) 보충송달은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7.자 2013마696 결정 참조).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설령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배우자인 J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은 적법하게 보충송달 되었다. 또한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및 동법 제189조에 따라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므로 이 또한 적법하다.

나아가 제1심판결 정본이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이상,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도 적법하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1심 법원이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기에 앞서 야간 또는 휴일 송달을 시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피고의 항소가 추후보완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통상의 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소장 부분부터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또한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1심판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위 가의 1)항과 같은 사정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추후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열

판사주철현

판사정경수

별지